



### 1. 법률

-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- 나.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- 다. 금융지주회사법

## 1. 법률\*

###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(2017/4/18개정·2017/10/19시행<sup>1)2)3)</sup>)

#### 1) 목적

-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은 기존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유지함에 따라 다수의 증권회사가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
  - 2014년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반영하고, 투자은행 업무와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순자본비율(NCR: Net Capital Ratio) 산출방식을 개편
-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과 관련하여 실제 법원의 확정 판결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벌칙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함으로써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
  - 기존의 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 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, 동일·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·과징금·벌금이 금융업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

\* 해당 내용은 제정된 국회 법률안 및 국회에서 공지하는 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1) 다만, 166조의2 및 4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
- 2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166조의2 1항 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, 1. 이 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166조의2 1항 3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자, 2. 이 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한 자
- 3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349조 및 428조 1항 및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, 또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443조, 446조 60호 및 6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



## 2) 주요 내용

### □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(순자본비율) 변경(166조의2)

-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(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) 100분의 200에서 순자본비율(영업용순자본에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값) 100분의 150으로 변경

### □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

-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초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(349조 1항)
  - (기존)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
  - (개정)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범위
-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(428조 1항)
  - (기존) 위반금액의 100분의 40의 범위
  - (개정)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

### □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벌금 부과수준 상향(443조)

- 미공개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, 부정거래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수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

### □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(449조)

-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,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



**나.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(2017/4/18개정·2017/10/19시행<sup>4)</sup>)**

**1) 목적**

-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**2) 주요 내용**

-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(43조 1항)
-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(43조 2항)

**다. 금융지주회사법 개정(2017/4/18개정·2017/10/19시행<sup>5)6)7)8)</sup>)**

**1) 목적**

-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-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  -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며,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,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

---

4) 35조 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  
 5) 다만, 10조 2항, 15조의2, 15조의3, 50조 3항, 70조 4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6조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
 6) 57조의2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며, 64조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  
 7) 69조 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,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 
 8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64조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



## 2) 주요 내용

### □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및 발행절차 등 마련(15조의2 및 15조의3 신설)

- 은행지주회사가 사채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그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(조건부자본증권)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

#### 〈조건부자본증권〉

-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하며, 조건부자본증권에는 역(逆)전환사채, 의무전환사채(강제전환사채) 등이 있음
- 일반 전환사채(CB)의 경우 전환권이 채권자에게 있지만 역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아닌 사유 발생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, 일반 채권보다 표면 금리가 높지만,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
- 2013년 말 바젤Ⅲ가 시행되면서 은행 혹은 금융지주회사는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하는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(영구채)은 반드시 '전환' 혹은 '상각' 조건으로 발행해야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
- 일명 '코코본드'라고도 함

### □ 비은행지주회사 손자회사 등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투자계약 해소(26조 1항, 32조 1항 및 43조의3 단서 신설)

- 비은행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이 경우 손자회사 등의 해당 지배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의무 적용을 배제

### □ 임직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(57조 1항)

- 금융지주회사 등의 소속 임직원을 법령위반 주체에 추가하여 임직원 개인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

### □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(64조 1항)

-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3배 인상하고,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 간 규제차익이 없도록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인상



□ 영업정지 같은 과징금 제도 도입(64조 2항 신설)

-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

□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(69조 1항 후단 신설)

-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에 제한이 없어 체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

□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(72조 1항 및 2항)

-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시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, 임직원이 서류의 비치·제출·보고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